

# ‘죽도문제연구회’의 「평화선」에 대한 사실 날조 방식\*

최 장 근\*\*

(e-mail : nihonbu@daegu.ac.kr)

## <목 차>

- |                         |                        |
|-------------------------|------------------------|
| 1. 들어가면서                | 4. 시마네 현의 죽도어업정책 사실 조작 |
| 2. 평화선의 합법성에 대한 사실 조작   | 5. 평화선 이후 독도문제 사실 조작   |
| 3. 시마네 현의 독도상륙 시도 사실 조작 | 6. 맺으면서                |

키워드 : 죽도문제연구회(Takeshima Problem Research Group), 독도(Dokdo), 죽도(Takeshima), 평화선(Peace Line), 이승만라인(Syngman Rhee's Line)

## 1. 들어가면서

대일평화조약 체결로 철거가 예정된 맥아더라인에 의해 유지되었던 동해의 질서를 한국정부는 1952년 1월 18일 평화선으로 대체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18일의 각의결정과 2월 22일의 ‘시마네 현고시 40호’로 독도<sup>1)</sup>가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새로운 영토가 되었는데, 평화선에 포함된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승만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불법적인 「이승만 라인」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sup>2)</sup> 죽도문제연구회도 「1952년 1월 18일 한국에 의한 이승만 라인이 부당하게 설치되고, 2월 11일에는 일본 선박이 한국 측으로부터 총격을

\* 2017년 교육과학부 정책연구과제 수행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교수, 일본정치

1) 본고에서는 ‘독도’라는 명칭은 한국영토, ‘죽도’라는 명칭은 일본영토라는 의미로 편의적으로 사용함.

2) 「竹島問題」(일본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검색일2017.1.3.).

받아 선원 1명이 사망하고 3월 2일에는 첫 나포선박이 나왔다. “일본의 나포 어선은 328척, 억류 선원 3,929명, 사상자 44명이 이승만 라인에 따른 일본측의 피해 총수이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이승만 라인이 소멸되지만, 같은 해 11월 6일자 ‘시마네 신문’은 이승만 라인에 의한 시마네현 관계자의 피해는 억류 121명, 포획 된 선박 11척”<sup>3)</sup>라고 피해자 의식을 강조했다.

본고에서는 죽도문제연구회가 평화선을 부정하기 위해 당시 시마네 현의 대응과 일본선박들의 나포상황을 증거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과 평화선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내용을 고찰하려고 한다.

연구방법으로서는 최근 일본영토론 조작에 선봉에 서 있는 죽도문제연구회<sup>4)</sup> 구성원들의 논리<sup>5)</sup>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평화선의 합법성, 시마네 현의 독도 상륙 시도, 시마네 현의 죽도어업정책, 일본어선 나포’ 등에 대한 사실 조작을 분석한다. 선행연구에는 평화선의 합법성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바있지만, 평화선을 불법이라고 하는 죽도문제연구회의 논리를 분석하여 일본의 논리가 조작적인 것임을 논증한 연구는 없다.

## 2. 평화선의 합법성에 대한 사실 조작

### 2.1 ‘한국의 독도 영유권’ 부정

일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연합국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으로 일본이 침략한 영토를 모두 몰수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각서 677호로 독도를 일본이 침략한 영토로 간주하여 독립국가의 한국영토로 취급했다. 연합국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미영간의 인식 차이로 영토적 지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무인

3) 스키하라 타카시(杉原隆)(2015.8) 「‘이와미 타임즈’가 이야기하는 이승만 라인」에서 『한일어업대책운동사』에 따른 것임. 본 연구에 활용한 자료는 ‘죽도문제연구회’ (<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자료 「藤井賢二竹島問題研究顧問, 杉原隆前竹島問題研究顧問(研究レポート, 杉原通信)의 보고서」를 활용하였음.

4) 스키하라 타카시(2015.8) 「‘이와미 타임즈’가 이야기하는 이승만 라인」, ‘죽도문제연구회’ 참조.

5) 죽도문제연구회가 아베정권의 일본외무성에 일본영 토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은 동일한 독도 영유권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도의 분쟁지역은 당사지간의 문제로 미루고 유인도에 대해서는 신탁 통치한다는 방침을 정하였기에 무인도인 ‘독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

죽도문제연구회는 연합국최고사령부 명령서 677호의 독도 영유권 조치에 대해 「태평양전쟁 종결 후 1946년 GHQ(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1월 29일의 각서 “SCAPIN677”로 일본 정부가 죽도에 대해,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및 행사하고자 도모하는 것을 정지하라고 지령했다. 게다가 6월 22일에는 SCAPIN 1033호의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구역에 관한 건6)으로 일본의 선박 및 선원은 죽도(독도)에서 12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을 것, 이 섬과의 접촉은 일체 용서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른바 맥아더라인 밖에 죽도를 두었다.’ 7)라고 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음을 인정했다. 또한 「시마네 현(島根縣)은 1946년 7월 26일에 시마네 현령(島根縣令) 제49호로 시마네 현 어업단속규칙(島根縣漁業取締規則)에서 죽도와 강치어업에 관한 항목을 삭제했다. 죽도는 1950년 7월 6일 ‘SCAPIN 2160호’로 미군 해상폭격 연습지구로 지정되었다.’ 8)라고 하여 독도가 시마네 현이 관할하는 어업구역에서 제외되었지만,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는 섬이 된 것이 아니고, 연합군이 관할하는 섬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죽도문제연구회는 대일평화조약에서의 독도영유권에 대해서는 「1951년 9월 8일에 조인되어 1952년 4월 28일에 발효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죽도의 일본령으로서의 지위에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동해대(東海大)교수, 츠카모토 타카시(塚本孝)씨의 연구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9)」라고 한다. 즉 「죽도는 조선의 영토인 것이 아니라 시마네현 일부인 것으로 기록한 ‘러스크서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문언만을 보고, 죽도 이름은 없지만 ‘포함한다’고 하였으므로 여

6) 원 제목은 “日本の漁業及び捕鯨業許可区域に関する件”임.  
7) 스키하라 다카시(2015.8) 「속 죽도의 어업권(漁業權)의 변천에 대하여 -오키노시마어업협동조합연합회(隠岐島漁業協同組合連合會)의 동향을 중심으로 -」, ‘죽도문제연구회’ 참조.  
8) 전게서.  
9) 후지이 켄지(藤井賢二)의 논리는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다. 죽도문제연구회는 가와카미 겐조의 『죽도 역사지리학적 연구』, 다카노 유이치의 『일본의 영토』 등의 1세대 일본 영토론자들의 논리를 쓰카모토 등이 법학자라는 이름으로 일본영토론을 왜곡시킨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주장할 뿐임.

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많은 섬들과 같이 죽도도 일본이 포기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sup>10)</sup> 「왜냐하면, 조약 해석의 기본 룰로서 빈조약법 조약 제32조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조약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또는 불명확한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해석의 보완적인 수단, 특히 조약의 준비작업 및 조약의 체결 때의 사정에 의거한다’라고 하였다. 대일강화조약 작성의 과정에서 죽도에 관한 한국의 요구를 미국이 거부한 것은 이것에 해당되기 때문이다.<sup>11)</sup>」라고 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러스크서한 하나만 보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왜곡되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1946년 1월의 연합국최고사령부각서 677호를 비롯해서 1951년 8월의 일본영역참고도<sup>12)</sup>가 만들어질 때까지의 대일평화조약 체결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독도는 한국영토로 해석된다.<sup>1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문제연구회는 「죽도가 연합국과의 관계에서는 일본령이 되었지만,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일본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죽도의 일본령으로서의 지위에 변화가 없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sup>14)</sup>」라고 사실을 조작하고 있다.

## 2.2 미국의 독도 폭격훈련장 지정 해제

독도가 미공군의 폭격연습장 지정은 2번에 걸쳐 행해졌다. 1948년 1차로 지정되었다가 한국어민의 사상자가 나와 한국정부의 요청에 의해 지정을 철회했다. 두 번째는 일본정부의 요청으로 재개되었다가, 1952년 한국산악회가 재개된 것을 확인하고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지정을 철회했다. 죽도문제연구회는 독도가 미공군 폭격연습장에 포함된 것은 미일합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

죽도문제연구회는 독도폭격연습장 해제에 대해 「죽도의 폭격연습지(爆擊演習地)에 대해서 시마네 현(島根縣)은 1952년(昭和27) 5월 20일 외무대신(外務大臣)과 농림대신(農林大臣)에게 「시마네 현 오키지청 관내 죽도를 주류군(駐

10) 스키하라 다카시(2015.8) 「속 죽도의 어업권(漁業權)의 변천에 대하여 -오키노시마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동향을 중심으로 -」 ‘죽도문제연구회’ 참조.

11) 전게서.

12) 전게서.

13) 전게서.

14) 전게서.

留軍)의 폭격연습지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라고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1953년(昭和28) 3월 19일 미일합동위원회(日米合同委員會) 해상분과위원회(海上分科委員會)에서 죽도의 폭격훈련지역(爆擊訓練地域)을 삭제하기로 합의하여 미일합동위원회에서 승인되어 정식으로 죽도는 연습구역에서 해제되었다.」<sup>15)</sup>라고 하여 시마네 현이 요청하여 연합국이 독도가 미 공군 폭격연습지에서 제외하여 일본영토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사실 독도가 연합국최고사령부의 관할구역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발령한 「SCAPIN677호」에 의해 한국이 관할 통치하는 구역에 있었다. 실제로 한국어민들이 독도에서 조업하다가 1948년과 같은 미 공군의 폭격연습에 의한 희생자를 막기 위해 한국정부의 중지요청으로 폭격연습지에서 제외된 것이었다.<sup>16)</sup>

죽도문제연구회는 「이와미 타임즈」<sup>17)</sup>를 인용하여 「1952년 이승만 라인이 설정되어 한일 양국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던 1953년 3월 14일자의 동신문은 근접한 미일합동위원회(3월 19일 개최)는 주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죽도를 폭격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미국동공군의 웨일랜드 사령관이 지난 2월 27일 폭격훈련의 중단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지만, 일본 정부에는 통보하지 않은 것을 들고 있다. “죽도인가 독도인가”라는 타이틀로 주목받고자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합동위원회에서 미군이 사용하는 일본의 시설지역 리스트에서 죽도가 삭제되는 형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한국정부가 요청하여 미군이 독도를 미공군의 훈련지에서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죽도문제연구회는 「죽도를 일본령으로 미국이 인정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하여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사실을 조작하고 있다. 이처럼 죽도문제연구회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어떠한 사료를 본질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런 논증없이 결론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말한다.

이처럼 시마네 현은 평화선에 의해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게 되었고 연합국이 이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오히려 연합국의 조치에 의

15) 스키하라 다카시(2015.8) 「속 죽도의 어업권의 변천에 대하여 -오키노시마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동향을 중심으로 -」, ‘죽도문제연구회’ 참조.

16) 전개서.

17) 스키하라 다카시 「이와미 타임즈」가 이야기하는 이승만 라인, ‘죽도문제연구회’ 참조.

해 독도가 일본이 관할하는 영토가 되었다고 사실을 조작했다.

### 2.3 ‘한국의 실효적 점유’ 부정

한국은 1946년 SCAPIN677호에 의해 「일본영토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제주도, 울릉도, 독도이다. 최종적인 영토 결정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게 되었다. 그런데 죽도문제연구회는 한국의 독도 실효적 관할통치에 대해 「일본의 점령기, 맥아더라인에 의한 규제 이외에도 주일미군의 폭격 훈련장으로 사용된 적도 있고 일본인은 죽도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 사이에 한국인이 죽도에서 밀어를 하고 있었다. 위의 한국인 경찰관의 주장은 죽도영유의 근거를 국제조약이 아니라 일본인이 없는 동안에 한국인이 죽도에서 행한 불법 어로에 근거한 잘못된 것이었다.」<sup>18)</sup>라고 하여 독도 지역은 연합국최고사령부의 관할통치지역이라고 한국이 몰래 들어가서 어업에 종사했다고 하여 한국의 실효적 관할통치를 부정했다. 일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미일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불법으로 독도를 점유했다면 미국이 이를 저지했을 것이다.<sup>19)</sup> 한국이 독도를 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한국영토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1953년 7월 12일 죽도에서 일어난 순시선 「헤쿠라」의 총격사건」<sup>20)</sup>, 「1954년 8월 23일에는 순시선 「오키」의 총격사건, 동년 11월 21일의 순시선 「헤쿠라」 「오키」 폭격사건이 일어나 일본인의 죽도 상륙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죽도에서의 일본인 어로는 1954년 5월 3일 오키섬 고카무라(五箇村) 구미(久見) 어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시마네 현 어업 단속선 「島風」에 승선해 실시한 이래 행해지지 않았다.」<sup>21)</sup>는 것이다.

죽도문제연구회는 1953년 “7월 12일 총격사건 이전에 「헤쿠라」에 승선한 한국인 경관은 사카이(境) 해상보안 부장에게 「이승만 라인, 맥아더라인에서 보아도 한국 영토일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일본강화조약까지 아무

18) 전개서.

19) 전개서.

20) 1953년 7월 15일 시마네현 지역신문인 『山陰新報』(현 산음중앙신보)에 게재된 사설 「한국선의 발포와 죽도의 위협」, ‘죽도문제연구회’ 참조.

21) 후지이 겐지 「전후 한국은 어떻게 해서 죽도를 빼앗았는가 -죽도문제의 현 위치」, ‘죽도문제연구회’ 참조.

것도 말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일본 영토라고 하는 것은 한국영토에 대한 침략 행위가 아닌가」<sup>22)</sup>라고 죽도가 한국령인 것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주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승만 라인은 1952년 1월 18일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이른바 이승만 라인 선언으로 한국이 설정하고 죽도를 이 해역에 포함시킨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공해 상에 선을 긋고 주권이 미치는 행위를 인정받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다.

### 3. 시마네현의 독도상륙 시도 사실 조작

#### 3.1 시마네마루의 불법적인 독도 접근

한국이 1946년 1월부터 SCAPIN 677호에 의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기 시작했다. 대일평화조약에서도 한국의 관할 통치상태를 변경하지 않았다. 맥아더라인으로 인해 일본은 독도 근해 12해리에 접근이 금지되어있어서 독도 상륙은 불가능했다. 대일평화조약에서 한일 간의 해양경계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없었다. 하지만 연합국의 해체와 더불어 맥아더라인은 없어질 상황이었다. 한국은 맥아더라인을 대신해서 평화선을 선언하여 기존의 어업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시마네 현도 일본정부 입장에 편승해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상황은 죽도문제연구회가 「1952년이 되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4월을 앞둔 1월 18일 한국 정부는 자국의 영해를 소위 “이승만 라인”이라 불리는 선으로 명시하는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고 독도는 한국 해역에 포함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고, 시마네 현의 각계로부터도 한국의 행동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sup>23)</sup>라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일본정부가 사실을 왜곡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결정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시마네 현에서도 한국의 독도 점유 상황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일본선박들이 1953년, 54년에 걸쳐 독도상륙을 시도했다.<sup>24)</sup>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시마

22) 진계서, 『독도문제개론』에서 인용.

23) 스키하라 다카시(2015.8) 「1953년 연습선을 독도에 파견한 이치카와 타다오 전 오키오 등학교 교장의 ‘상벌’」, 『죽도문제연구회』 참조.

네 현 수산시험장 시험선 ‘시마네마루(2세)’<sup>25)</sup>였다. 그 다음으로 「오키고등학교 수산과 연습선 ‘오토리마루’, 그리고 마이즈루 해상보안본부 순시선 ‘오키’, ‘쿠즈류’, ‘헤쿠라’, 시마네 현 단속선 ‘시마카제’ 등」이었다.<sup>26)</sup>

시마네 현 수산시험장에 「1953년에 부임한 16대 간토 세이(神藤正) 소장은 첫 업무는 국가사업으로서 195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작된 “쓰시마 난류영역 개발연구”였다.」 「첫 번째 조사는 간토소장도 시마네마루에 승선하여 1953년 5월 27일 오전 9시 하마다를 출발했다.」 「동경 132도 자오선을 따라 북쪽으로 11점에서 관측을 마치고 28일 오전 4시 마지막 측량의 위치에 오자 죽도가 보였다. 측량을 마치고 오전 10시 독도에 접근하니 수척의 한국 선박이 있었고, 배에 접근한 한국 어민과 대화했다고 한다. 자세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측의 선박은 동력선 6척, 무동력 선 6척(그중 1척은 잠수장비선박) 어민 수 약 60명이었다고 한다. 이때는 죽도에서 3해리의 거리를 유지하여 착안하지 않고 배를 저어 온 한국인과 교류했을 뿐으로 하마다에 돌아와서 츠네마츠 야스오(恒松安夫) 시마네 현지사에게 보고했다.」<sup>27)</sup> 「각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어 정부로부터 보고를 요구받았기 때문에, 간토소장이 상경하여 외무, 농림, 운송, 법무 각 성에서 상황을 보고하였다. 그 후 죽도 부근에서 조사할 때는 접안하였고, 같은 해 9월 17일<sup>28)</sup>, 10월 21일, 다음 해 1954년 3월 23일, 이렇게 3회 시마네마루2세의 승무원은 죽도에 상륙하여 사진을 찍거나, 한국 어민이 섬에 있을 때는 고기잡이에 대해 질문하는 등 교류하였다.」 「또한 1953년 6월 16일 오전 4시 50분 하마다에서 북쪽으로 130해리, 죽도 동쪽 11해리 해역」에 접근

24) 테라오 무네후유(寺尾宗冬) 기자가 「사카이 해상보안부와의 친밀한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아사히신문은 단독 1신문사 취재로 1951년 11월 사카이고등학교 수산과의 ‘아사나기마루’로 죽도 도해한 적이 있었다.」, 스키하라 다카시, 「1953년, 54년 죽도에 도향한 일본선박에 대한 보유(補遺)」, ‘죽도문제연구회’ 참조.

25) 「폐전 후 자재부족 속에서 건조된 목조 63톤의 시험선이 ‘시마네마루2세’이다.」, 스키하라 다카시(2015.8) 「1953년 연습선을 독도에 파견한 이치카와 타다오 전 오키고등학교 교장의 ‘상벌」, ‘죽도문제연구회’ 참조.

26) 스키하라 다카시(2015.8) 「1953년, 54년 죽도에 도향한 일본선박에 대한 보유(補遺)」. 이 글은 「박병섭씨 “1953년 일본 순시선의 독도침입” 영남대학교 “독도연구” 17호 (2014.12.31 발행),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고문인 후지이 켄지, “1953년은 죽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해이다.”, 2015년 2월 22일 죽도의 날 기념식 행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죽도문제연구회’ 참조.

27) 본 내용은 「「80년사」에 실린 간토의 “대마도 난류개발조사의 추억”에 의한 것이다. 전개서.

28) 「9월 17일에는 한국인이 없었기 때문에 섬에서 강치와 놀기도 했다는 기사가 아사히신문에 실려있다.」 전개서.



했다는 것이다.<sup>29)</sup>

죽도문제연구회는 시마네마루가 여러 차례 독도에 상륙했거나, 독도근방까지 접근했다는 것으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었지만, 일본이 한국의 독도점유를 묵인하지 않았으며 또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사실을 포기한 적이 없음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 3.2 사적 목적으로 불법적 독도도항

독도에 한국인 상주한다는 사실이 일본 전국에 보도됨으로써 시마네 현에서는 독도에서 한국인을 퇴거하려는 노력을 했다. 「전전 죽도를 관할하고 있던 오키의 고카무라에서 강화조약 축하 기념식이 진행되었고, (1951년) 11월에는 돗토리 현 리츠사카이고등학교 수산과 관계자가 연습선 ‘아사나기마루’로 독도에 상륙」<sup>30)</sup>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오키고등학교 교장 이치카와 타다오씨는 일본 소속의 섬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결정된 죽도에 한국인이 건너왔다는 정보를 접하고, 1953년 6월 25일에 오키고등학교 수산과의 연습선 ‘오오토리마루(鵬丸)’를 이승만 라인 설정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일한이 대립 중인 죽도에 도항시켰다.」<sup>31)</sup> 도항 경위에 대해 「시마네 현 수산시험장 시험선 ‘시마네마루2세’가 알린 죽도에 한국인이 있다고 하는 정보에 마이니치신문 오키 사이고통신부 사토미 주임기자가 지인인 이치 타다오 교장에게 호소하여 실현되었다.」<sup>32)</sup>는 것이다. 또한 미호마루도 같은 시기에 독도를 향했다고 한다. 즉 「죽도의 강치 사냥에 8년간의 경험을 가진 사이고초의 어업자 히로타니 모코지로씨(64)가 갑자기 죽도가 그리워져서, 6월 25일 밤 자신이 소유한 ‘미호마루’(15톤) 선원 4명과 함께 6월 26일 낮에 죽도에 도착했다. 정확하게 점심 무렵에 섬에 있던 한국인들이 강치요리와 해산물을 먹고 있었다. “울릉도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쌀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쌀 6되를 두고 왔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배에 24, 5세와 34, 5세의 남자가 와서 “제발 일본에 데려가 달라”고 울듯이 사정했기 때문에 오키에 돌아가서 상담해보겠다고 하고, 26일 오후 2시경 죽도를 떠나왔다」<sup>33)</sup>는 것이다.

29) 전개서.

30) 스키하라 다카시(2015.8) 「1953년 연습선을 독도에 파견한 이치카와 타다오 전 오키고등학교 교장의 ‘상벌’ 죽도문제연구회’ 참조., 상동.

31) 전개서.

32) 전개서.

당시 독도 영유권 문제가 양국관계의 긴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시마네현도 국가정책을 반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민감한 한일관계와 그 영향을 고려하여” 현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도해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죽도문제연구회는 독도의 영유권 주장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과거에 불법적으로 독도에 도항했던 ‘오토리마루’와 미호마루의 독도 도항조차도 영토주권을 행사한 증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토리마루의 불명예스러운 행위조차도 정당한 행위로 변경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하여 독도 영유권의 본질을 조작하고 있다.

### 3.3 해상보안부 순시선의 독도도항

독도에 한국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 순시선도 독도에 도항을 시도했다. 즉 「시마네현 수산시험장의 ‘시마네마루’로부터 죽도에 한국인이 있다는 정보를 얻고 해상보안본부는 1953년 6월 17일에 “죽도 주변 해역의 밀항 밀어 단속강화”를 결정했다.」<sup>34)</sup>는 것이다.

해상보안부 순시선 ‘쿠즈류’와 ‘오키’호는 「6월 26일 오후 10시쯤」 독도로 향했다. 「쿠즈류에 동승하고 있던 시마네현 수산상공부 어정과의 오모다카 토미조(澤富造), 같은 수산과의 이가와 노부오(井川信夫)가 6월 28일자로 시마네현 지사 츠네마츠 야스오(恒松安夫)에게 “복명서”를 제출했다.<sup>35)</sup> 「이 순시선의 죽도행은 시마네현과 해상보안부의 비밀합동조사」로서 「해상보안원이 ‘시마네현 오치군 고카무라 죽도’라는 표주를 세우고, 한국인과 이야기했다.」<sup>36)</sup>이로 인해 오키도민은 「올 해 중에 실현 - 오키 도민, 죽도에 출항한다」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다.<sup>37)</sup>

쿠즈류호가 독도에 일본영토 표식을 세웠기 때문에 시마네현 어민들은 독도에서 한국민을 추방하고 일본이 점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일본 보안청 순시선 ‘헤쿠라’호가 독도 부근으로 접근하다가 충격을 당했

33) 「6월 28일 아사히신문 지방판에 “일본에 가고 싶다 - 히로타니씨가 이야기하는 - 죽도의 한국인 애원”이라는 기사가 있다.」 전게서.

34) 전게서.

35) 전게서.

36) 전게서.

37) 전게서.

다.<sup>38)</sup> 「전날(1953년 7월 12일) 아침 순시선 ‘헤쿠라’(사카이 해상보안부장)가 죽도 부근을 순찰하던 중, 한국어선 3척이 자동소총을 가진 한국 경찰 7, 8명에 둘러싸여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순시선은 보트를 내리고 섬에 상륙하려고 했는데 한국 경찰 2명이 통역을 동반하고 다가와서 “여기는 한국의 영역이니 물러가라.”고 요구했다. 일본 측은 보트를 순시선에 인양하고 배를 갈아타는 순간, 한국 경찰은 갑자기 수십 발을 발포, 그 중 2발이 ‘헤쿠라’에 명중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sup>39)</sup>는 것이다.

이때에 사카이 해상보안부장은 독도에 상륙하여 표주를 세웠는데, 「이 시기 죽도에서 양국이 자국 영토를 표시한 표주를 세우거나 상대방의 것을 뽑거나 하는 행동이 있었지만, 10월 6일, 그 충격을 받은 순시선 ‘헤쿠라’가 일본 측 통산 3번째로 “시마네현 오치군 고카무라”라고 표기한 표주를 동도와 서도 양쪽에 세웠다.»는 것이다.

헤쿠라호가 충격을 받은 후 일본외무성이 “죽도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사카이 해상보안부장은 순시선 ‘나가라’에 탑승하여 10월 17일 오전 2시경 사카이하를 출발하여 죽도로 향했고, 「내각위원 츠지 마사노부(辻政信代), 외무성가와카미 사무관<sup>40)</sup>,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 코모리 공안과장 등이」 「10월 18일 정오 죽도 300미터 정도까지 접근했지만, 기상이 좋지 않아서 죽도에는 상륙하지 못하고 약 1시간 동안 해상에서 시찰하고 ‘헤쿠라’가 세운 표주가 뽑혀 있는 것을 목격했다.»<sup>41)</sup>는 것이다.

독도 상륙을 시도한 순시선은 1953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쿠즈류호, 오키호, 헤쿠라호, 나가라호 4척이었고, 3번에 걸쳐 독도에 일본영토 표식을 세웠다. 헤쿠라호가 한국경관으로부터 충격을 받았다. 일본이 세운표식은 한국인에 의해 다시 제거되었고, 헤쿠라호가 충격을 받은 후 일본 순시선의 독도 상륙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독도가 한국이 점유하게 되어 1953년 10월 이후 일본 선박의 독도 도항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시마네 현이 주도하여 1954년 6월 구미 어협 어부들을 태

38)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가 해상보안제도 창설 60주년 기념으로 발간한 『8관 60년의 항적』에 의한 내용임. 상동.

39) 아사히신문 1953년 7월 14일자 전국판 「1953년 6월 25일, 외무성이 5월말」 상동.

40) 「가와카미 사무관은 1966년 “죽도의 역사 지리학적 연구”를 간행하는 카와카미 겐조(川上健三)씨이다」 상동.

41) 전게서.

우고 독도 근해에서 어로를 시도했다. 「시마네현의 단속선 ‘시마카제’」의 마츠무라 고키치(松村吾吉) 선장이 「1954년 쿠미어협 11명의 어부들이 시마네현의 의뢰를 받아 죽도에서 일본 측의 마지막 어업권 행사를 행했다.»<sup>42)</sup> 시마네 현 단속선 ‘시마카제’가 어부 11명과 선박관계자 포함 18명이 독도 도항을 시도한 것은 가족에게조차도 도항 사실을 비밀로 한 한국의 독도점유에 대한 목숨을 각오한 항의차원이었다. 독도에서 미역과 전복을 채취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날은 독도에 한국경찰 혹은 한국인이 없었다는 것이다.

죽도문제연구회는 1953년 6월부터 1954년 6월까지 일본은 개인적 차원, 시마네현 지자체, 국가 차원에서 독도에서 어로를 하거나 ‘일본영토’로서 관리하였다. 그런데 한국 경찰이 독도에 무력으로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부득이 일본에 ‘일본영토’로서 실효적 관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 4. 시마네현의 죽도어업정책 사실 조작

### 4.1 시마네현 어업 조정규칙의 개정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년 맥아더라인이 설치되어 독도 주변 12해리 내에 일본어선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반면 한국은 독도 주변 12해리 내에서 조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SCAPIN 677호에 의해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에 있는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미국에 로비하여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최종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법적 지위가 확립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영미 중심의 연합국은 대일평화조약에서는 독도의 법적지위에 대해 애매하게 처리했다. 죽도문제연구회는 대일평화조약 체결에 대해, 「1951년이 되자 일본의 국제복귀를 인정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가 개최되어 9월 8일 평화조약(平和條約)이 체결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 제한을 주고 있던 개별 항목의 재검토도 시작되었다. 시마네 현(島根縣)은 1952년(昭和27) 1월 17일 정부에 죽도의 연습지구 지정(演習地區指定) 해제와 죽도(竹島)에서의 어업 부활을 요망했다.

42) 쿠미어협의 조합장 와키타 사토시(脇田敏)가 “죽도 어업권 행사의 경과”라는 보고서(아들 와키타 카즈히코(脇田和彦)씨가 시마네현에 기증)에 의함. 전게서..

평화조약의 효력 발효를 눈앞에 두고 같은 해 4월 25일 GHQ는 맥아더라인의 철폐를 통고하여 죽도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구역에 관한 모든 제한을 소멸시켰다.」라는 것이다.

죽도문제연구회는 평화조약이 체결되어 맥아더라인도 철폐를 하게 되어 독도에서 주일미군의 공군폭격훈련장 지정도 철회되기를 희망하고 조업도 가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다.

시마네 현에서도 대일평화조약에 대응하여 독자적인 대응조치로서, 「시마네 현도 1952년(昭和27) 5월 16일 「시마네 현규칙 제29호」로 「시마네현 해면(海面)어업조정(調整)규칙」의 일부를 개정하여 「제4어업 허가」에 강치어업을 추가하여 지사에 의한 허가어업으로 하였다. 이유로는 「이미 출어 희망자도 상당수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해 포획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어 전전과 같이 어업으로서 질서유지를 도모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었다. 죽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는데, 시마네 현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간주하여 독도에서 강치조업을 현지사가 허가하는 식으로 변경했다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토주권 주장과는 무관한 것이다.

실제로 독도는 한국이 관할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제적 관례에 의해 영토에는 영해와 전관수역이 존재한다. 한국정부의 평화선 조치가 바로 맥아더라인 철수로 인한 일본 어선들의 한국근해에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사실상 시마네현의 조치만으로는 이 구역에서 일본 측의 조업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 4.2 협동조합 연합회 발족과 어업허가

시마네 현의 오키노시마(隱岐島) 어업협동조합은 독도에서의 어로활동 및 영유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다. 즉, 「맥아더라인의 철폐, 시마네현 해면(海面)어업조정(調整)규칙 개정 등 전후 시마네현의 어업행정 개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1953년 1월 25일 오키노시마 어업협동조합 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오키노시마 전체 어협의 대표자와 이사가 되어 있는 현회의원(縣會議員) 등 32명이 회원으로, 초대 대표이사·회장은 사이고쵸(西郷町) 거주 현회의원 나카가와 히데마사(中川秀政)씨가 취임했다.」 나카가와(中川)<sup>43)</sup>는 「연합회의 리더

43) 「사이고쵸장(西郷町長)을 맡은 다음 1947년(昭和22)부터 6기 현회 의원(縣會議員)으로 현의회 부의장(縣議會副議長), 의장(議長)이 되기도 했다.」 스기하라 다카시, 「속 죽도

로서 “죽도의 영토권 확보와 도민의 이익 옹호에 관한 진정”<sup>44)</sup>을 적극적으로 현과 정부에 계속 올렸다.»<sup>45)</sup>고 한다. 「연합회는 5명의 이사와 3명의 감사가 운영의 중심이 되었지만, 초대 감사의 한 사람으로 구미 어협(久見漁協)의 조합장 와키타 도시(脇田敏)가 취임하고 있다. 와키타(脇田)는 이듬해 1954년 5월 현의 의뢰로 지구의 다른 어부 10명과 함께 이승만라인(평화선)에서 한국 측에 포함되어 있었던 죽도(竹島)에서 어로 행위를 실천했다.»고 한다.

오키노시마 어업협동조합 연합회의 독도에서의 조업 및 영유권 활동에 시마네현도 동조했다. 즉, 「오키노시마 어업협동조합 연합회의 순조로운 출발을 확인한 시마네 현(島根縣)은 1953년 6월 5일 시마네현 고시(告示)로 죽도에서의 공동어업권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어장 구역”은 죽도 주위 최대 고조시 해안선(연안 도서를 포함)으로부터 500미터의 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구역이며, “어업의 종류”는 미역, 우뭇가사리, 전복, 소라, 문어, 성게 어업이었다. “관계지구(關係地區)”는 오치군(穩地郡) 고카무라(五箇村), 츠마무라(都万村), 스키군(周吉郡) 사이고초(西郷町), 도고무라(東郷村), 후세무라(布施村), 나카무라(中村), 이소무라(磯村), 아마군(海士郡) 아마무라(海士村), 치부군(知夫郡) 우라고초(浦郷町), 구로키무라(黒木村), 치부무라(知夫村)」<sup>46)</sup>에 한정했다.

실제로 독도에는 한국이 영토로서 관할통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키노시마 어업협동조합 연합회에서는 한국의 점유가 불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어로규정을 정했고, 시마네현에서도 오키노시마 어업협동조합의 관계자들의 선동에 동조하였던 것이다.

또한 1953년 「6월 19일 시마네현은 현지사(島根縣知事) 츠네마츠 야스오(恒松安夫)의 명의로 허가어업(許可漁業)으로 “강치어업<sup>47)</sup>”을 추가했다. 이승만 라인(평화선)이 설정된 가운데 현실적인 강치 포획은 곤란한 듯하였지만, 하시오카 다다시게(橋岡忠重), 야와타 가즈마(八幡數馬), 이케다 구니유키(池田邦幸)가 허가 신청을 제출하여 허가받았다.» 하시오카 다다시게(橋岡忠重)는 전

의 어업권(漁業權)의 변천에 대하여 -오키노시마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동향을 중심으로 -, ‘죽도문제연구회’ 참조.

44) 원 제목은 “竹島の領土權確保と島民の利益擁護に關する陳情”임.

45) 스키하라 다카시(2015.8) 「속 죽도의 어업권(漁業權)의 변천에 대하여 -오키노시마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동향을 중심으로 -, ‘죽도문제연구회’ 참조.

46) 전개서.

47) 일본 명칭으로는 「あしか漁業」라고 함.

전에도 강치어렵의 권리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고, 야와타 가즈마(八幡數馬)와 이케다 구니유키(池田邦幸)도 전전에 포획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야와타 초시로(八幡長四郎), 이케다 고이치(池田幸一)의 후계자였다. 그러나 마즈에시(松江市) 기타호리초(北堀町)에 거주하고 있었던 나카이 요이치(中井養一)도 신청했지만 허가받지 못했다. 하시오카(橋岡)는 현으로부터 강치어렵의 허가를 받은 직후에 죽도로 가서 강치의 서식상황을 확인할 기회를 가졌다.<sup>48)</sup> 1953년 죽도에 한국인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 같은 해 6월 25일 오키고등학교 수산과의 실습선 “오오토리마루”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너갔을 때, 하시오카(橋岡)도 함께 하였다. 「강치어렵에 대해 실적이 없는 채 1965년 “시마네현 해면어업 조정규칙”을 전면 개정하였을 때도 “강치어업”은 허가제로서 계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49)</sup>는 것이다.

시마네현은 1953년 6월은 물론이고, 1965년 시마네현 해면(海面)어업조정(調整)규칙을 개정하였을 때, 전전 일제시대에 독도에서 강치조업 포획권을 갖고 있었던 가문에 대해 강치 포획권 요청을 허가했다. 시마네현의 이러한 조치는 중앙정부의 방침과 달리 도발적으로 지방자치체 측면에서 실제로 포획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유권 분쟁을 대비해서 형식적인 조치를 취했던 것일 것이다. 죽도문제연구회에서는 시마네현의 이런 조치가 독도 영토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로서의 증가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 5. 평화선 이후 독도문제 사실 조작

### 5.1 평화선 위반한 일본어선 나포

독도는 연합국최고사령부 각서 677호로 한국의 관할 통치가 되었고, 평화선은 한국이 맥아더라인 철폐이후 한일 간의 어업분쟁을 막아서 주변해역의 어업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은 이승만대통령이 불법적으로 획선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승만라인’이라고 한다.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어업주권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어선을 나포하는 것은 당연한 주권행사이다.

48) 스키하라 다카시(2015.8) 「속 죽도의 어업권(漁業權)의 변천에 대하여 -오키노시마어업 협동조합연합회의 동향을 중심으로 -」, ‘죽도문제연구회’ 참조.

49) 전게서.

죽도문제연구회는 일본 어선들의 나포상황에 대해 「전후 많은 일본 어선이 주변 국가에 의해 나포되어 어선원이 억류되었다. 그 수는 1945년부터 1965년까지 20년 동안 중국 187척(2,233명), 한국 327척(3,911명), 대만 51척(680명), 소련 1,164척(9,808명)」<sup>50)</sup>라고 하고, 한국에 나포된 것에 대해 「한국에 의한 나포는 대마도 북쪽에서 동지나해 북부 그리고 황해 남부에 걸친 넓은 해역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제주도 주변에 집중되고 있다.」<sup>51)</sup>라고 한다. 여기서 일본인들이 나포된 지역은 독도와 무관한 곳이다. 나포 일본어선은 독도의 영토주권과 무관하게 한국의 어업주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나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어선은 한국과 중국의 어업 주권선에 침범하여 어로를 했다. 죽도문제연구회가 「동지나해에서 황해에 걸쳐서는 중국에 의한 나포도 많이 발생하였지만 서일본 어업자에게 있어 양국의 나포·억류의 인상은 다르다. 어느 쪽이든 어선에 충격을 가했으며 한국에 의한 나포 과정에서는 8명이 사망했다.」라고 지적하는 것 것처럼, 당시 중국과 한국은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충격으로 단속했던 것이다.

나포어선의 보상에 대해서는 「이후 일본 정부에 의한 보상 인정은 1955년 2월 14일에 고토 앞 바다서 한국 함정에 충돌되어 침몰한 제6아케보노마루 사망자 21명도 추가되었다」<sup>52)</sup>라는 것처럼, 일본정부의 묵인아래 타국의 어업주권선을 침범하여 나포되었기 때문에 일본정부에 보상책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일협정 때까지 시마네 현 소속으로 한국에 나포된 일본선박 수는 ‘11척, 승무원 114명’이라는 주장이다.<sup>53)</sup> 즉, 「1955년 2월 일본의 트롤선 “제6 아케보노마루”가 이키, 쓰키시마 앞바다를 향해 중, 한국의 프리깃함의 추돌을 받아 선원 21명이 사망했다. 그 이후 이서저인망어선, 이동저인망어선, 근해저인망어선, 고등어잡이 어선 등 나포된 일본 어선이 이어졌다. 1955년 9월 15일에는 시마네현 야쓰즈카군 치쿠미무라 오오야자 기타우라의 시부야 효지로가 소유한 두 척의 저인망어선 하마다항 소속의 다이이치 야쓰즈카마루도 나포되었다.

50) 후지이 켄지 「‘이승만 라인’으로 한국이 초래한 일들」 ‘죽도문제연구회’ 참조. 이 내용은 『해상보안청 30년사』, 1979년에 의한 것임.

51) 후지이 켄지 「‘이승만 라인’으로 한국이 초래한 일들」 ‘죽도문제연구회’ 참조.

52) 후지이 켄지 「‘이승만 라인’으로 한국이 초래한 일들」 ‘죽도문제연구회’ 참조. 본 내용은 모리타 요시오 『한일 관계』, 1973년에 의한 것임.

53) 전개서. 평화선 선언부터 한일협정까지 나포된 일본어선의 수에 대해 「하마시의 향토 역사가 모리스기 카즈오씨는 이와미 타임즈 이외의 아사히 신문, 매일 신문, 산음 신문 등 많은 신문 등의 자료도 이용하여 이승만 라인 선언에서 한일조약발효까지 나포된 시마네현의 어선을 도표화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선박 수 11척, 승무원 114명이다. 그것을 마지막에 게재한다.」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강력히 나포에 항의를 계속했지만, 한국측도 강경한 태도를 보여 11월 17일 침범하는 일본 어선에 포격을 성명하고 11월 19일에는 격침을 성명하기에 이른다.」 「1956년 4월 18일, 하마다항을 거점으로 하고 있던 다이로쿠 하마토미마루가 나포되었다. 4월 28일자 이와미 타임즈가 하마다항 소속 나포된 선박 5척, 억류선원 총 56명으로 보도했다. 동년 11월 20일 제3헤이안마루, 앞에 기술한 제1 야쓰즈카마루와 이번의 제6 하마토미마루이다.」 「이와같은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는 배경에는 당시 전개되고 있던 일본인의 주한사유재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대립이 있었다.」 라고 했다.

이처럼 일본어선의 나포가 1955년부터 1956년 사이에 많이 행해졌다는 것은 그때에 가장 많은 일본 어선들이 평화선을 침범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한국의 어업자원을 관할하기 위해 평화선을 선언하지 않았다면 일본인들의 한국어장에 대한 불법남획은 극에 달했을 것이다. 만일 평화선이 없었다면 분쟁이 격화되어 국력 소모가 심각했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은 「주권선」으로 국가지도자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다.

죽도문제연구회는 나포어선의 증가에 대해 「나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1953년부터 1955년까지 3년간으로, 1년에 500명 전후의 일본인이 억류되었다. 이 시기, 일본의 조선통치에도 좋은 면이 있었다고 말한 1953년의 “구보타 발언”을 이유로 한국은 한일회담을 결렬시켰다. 1955년에 한국은 대일무역 전면금지 와 일본 어선에 대한 포격 성명을 내놓는 등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1954년부터 한국은 나포의 법적근거였던 어업자원보호법에서 정한 형기가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선원을 부산의 외국인수용소에 억류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 때문에 억류 어선원의 수는 900명을 넘었다.」<sup>54)</sup>라고 하여 한국의 일본어선 나포는 단순히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한국의 ‘인질 외교’가 가장 ‘성과’를 올린 것은 “1957년 12월 31일의 합의”였다.」<sup>55)</sup>라고 하는 것처럼, 한일협정을 앞두고 “인질을 외교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인질 외교’라고 사실을 조작한다.

## 5.2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일본정부는 「전년(1953년) 5월」에 한국인들이 독도에 상륙해 있는 것을 확

54) 후지이 켄지 「‘이승만 라인’으로 한국이 초래한 일들」, ‘죽도문제연구회’ 참조.

55) 전개서.

인하고, 독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할 것을 한국정부에 제의했으나 한국이 불법점유를 고집하여 거절했다고 주장한다.<sup>56)</sup> 마치 한국이 무력으로 독도를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날조하고 있다.

당시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1954년 1월 1일자 동신문은 시마네현 출신 당시 외무정무차관으로 이와미 타임즈의 고문이었던 고다키 아키라가 “죽도 문제 -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이외는 방법이 없다”라는 내용을 기고했다. 문장 옆에는 전년 5월 하마다에 있던 시마네현 수산시험장의 시험선 시마네마루가 죽도에 한국인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또한 고다키 아키라가 죽도문제 해결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야한다는 제안은 동년 9월 26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통보했지만, 한국은 9월 28일 거부를 전해왔다.」라고 한다.

이처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게 된 것은 시마네 현 출신 당시 외무정무차관 고다키 아키라가 제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일평화조약 체결이후, 한국이 독도를 실제로 관할 통치하게 되자,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의 독도점유상태를 변경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운운하였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대일평화조약 체결 이후 줄곧 일본국민들에게 독도가 조약에서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선전해왔기 때문이다. 그것도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것이 아니고 한국정부에 제안한 것이었다.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은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중재사안이 아님을 일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를 제소하겠다는 주장은 국제사회를 향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소란작전에 불과하다.

## 6. 맺으면서

죽도문제연구회의 독도 인식은 일본정부의 인식과 대체로 동일하다. 현재 일본정부는 죽도문제연구회가 조작한 일본 영토론을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반영

56) 죽도문제연구회가 연구 성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외무성과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죽도문제연구회가 「평화선」 이후 일본이 독도를 관할했다고 하는 증거로서 시마네 현의 여러 활동 사례를 연구하여 평화선이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사실을 조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내용을 고찰하였는데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선은 1952년 1월 18일부터 1965년 6월 22일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신생독립국 한국이 어업주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어업경계선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하여 양국 간의 해양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만일 평화선이 없었다면 일본이 사실과 정반대로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독도영토와 해양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심각하게 발생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일평화조약에 서명한 미국을 비롯한 48개국의 연합국에 포함된 국가들 중에서 평화선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한 국가는 유일하게 일본뿐이었다.

둘째, 일본정부가 사실과 다르게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함으로써 시마네 현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어업구역으로 다시 편성하여 어업규칙을 정하고 독도어업을 허가했다.

셋째, 한국정부는 연합국최고사령부각서에 따라 독도를 관할통치하고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대일평화조약체결과 더불어 맥아더라인이 파기되면 일본의 독도 및 조선해안의 침략이 예상되었다. 그래서 평화선을 선언하여 민관이 독도에 상륙하여 영토를 수호했고, 일본의 도발적인 남획으로부터 한국의 어업구역을 보호하고 기존어업질서를 유지시켰다.

넷째, 시마네 현에서는 평화선이 선언되고 한국의 민관이 합동으로 독도에 주둔하면서 일본의 접근을 막자. 순시선을 포함해서 일본어민들이 수차례 독도 상륙을 시도하였지만 한국관민은 충포를 동원하여 철저히 접근을 막았다.

다섯째, 일본정부가 평화선을 부정함으로써 일본 어선들이 평화선을 침범하여 나포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다. 일본이 평화선을 부정하는 태도는 1965년 일괄타결 형식으로 한일협정에서 한국의 독도 관할권을 유지하는 대신에 어업주권을 일본에 양보하여 평화선이 축소 조정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죽도문제연구회는 당시 한국의 평화선 선언에 대응하였던 시마네 현의 관민이 행했던 사례들을 부각시켜 평화선의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오히려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 경상북도사료연구회편(2014) 『竹島問題100問100答에 대한 비판』 경상북도, pp. 63-70.
- 경상북도독도연구기관통합협의체편(2016)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독도영유권 조작논리」  
(20010.12.28~2015.10.09.), pp.1-170.
- 독도연구보전협회편(2000) 『독도영유권자료의 탐구 제3권』 독도연구보전협회, pp.341-395.
- 신용하(2011)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의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pp. 249-312.
- 최장근(2005) 『일본의 영토』 백산자료원, pp.41-42.
- \_\_\_\_\_ (2014) 『일본의회의사록이 인정하는 다케시마가 아닌 한국영토 독도』 제이앤씨, p.15.
-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pp.1-291.
- 下条正男(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文春親書377.
- \_\_\_\_\_ (2005)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 竹島の 新研究』島根県総務部総務課, pp.1-160.
- 毎日新聞社編(1952) 『対日平和条約』毎日新聞社刊. 삼입지도.
- 「竹島問題研究会(島根県)」,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검색일2017.1.3.).
- 「竹島問題」(일본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검색일2017.1.3.).

논문 투고 일자 : 2017. 03. 21.
논문 심사 일자 : 2017. 05. 10.
게재 확정 일자 : 2017. 05. 10.

<要旨>

「竹島問題研究会」の「平和線」に対する事実の捏造の手法

崔長根

本研究は、「竹島問題研究会」が「平和線」の本質を捏造する手法について考察した。対日平和条約が締結され、韓国政府が東海上に設置した「平和線」によって、1965年の韓日協定による漁業協定の締結までは東海の漁業秩序が維持されていた。独島の領有権については、日本が敗戦した後、連合国最高司令部が韓国の領土として認めており、独島周辺12海里も韓国の管轄区域として認めている。対日平和条約においても、連合国は連合国最高司令部の措置を変更したものの、独島の地位についての言及は避けた。しかしながら、独島を日本の領土とは認めなかったのである。ところが、今日の「竹島問題研究会」は、従来の日本政府の立場を継承し、新たな論理を補強して独島の領有権を捏造している。

Takeshima Problem Research Group 's fact-making method for "peace line"

Choi Jang Keun

This study examined the way in which the 'Takeshima Problem Research Group' faked the essence of 'peace line'. The Peace Line, which was signed by the Peace Treaty for Japan and establish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East Sea, maintained the fishing order of the East Sea until the 1965 fishery agreement of the Korea - Japan Agreement was signed. Dokdo's sovereignty was recognized by the Allied Supreme Command as Korea's territory after Japan's defeat and Dokdo was recognized as a jurisdiction for 12 nautical miles around Dokdo. In the Peace Treaty for Japan the Allied Powers changed the actions of the Allied High Command to avoid mentioning Dokdo's status, but did not recognize Dokdo as Japanese territory. However, today 's Takeshima Problem Research Group succeeds the previous Japanese government 's position and fosters Dokdo' s territorial sovereignty by adding new logic to it.